

등록번호	경영-7138
기안자 전화번호	02-6673-8103
등록일자	2026.09.14.
결재일자	2026.09.15.
공개구분	공개

부장	실장	대표이사	
류병석	조학재	09/15 박성숙	
협 조			

2026년(2025년실적)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광명시는 **빛+**
“혁신·성장·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합니다」



“청 소 년 성 장 과 행 복 의 중 심”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 영 지 원 실

2026년(2025년 실적)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본 평가는 2026년에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 실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2026년 평가점수'는 2025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2026년도 평가결과를 의미한다.

I 서론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활동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예방·완화·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인권경영의 핵심 절차이다.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임직원, 시설 이용자, 보호자, 협력기관, 계약상대방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인권 이슈를 발굴하여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로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 교육, 사업운영, 안전관리, 고충처리 및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권 존중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은 청소년의 안전권, 참여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크다.

재단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첫째,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인권경영 선언과 제도 운영이 실질적인 현장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셋째, 청소년·이용자·직원·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리를 경영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넷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II 국내·외 인권경영 환경분석

□ 국내 법적 준거

○ 대한민국 헌법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임.
- 제11조부터 제37조까지는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근로권, 환경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법령, 관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권고와 의견 표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제도적 근거로 작용함.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노동법임.
- 노동 인권 관련 지표(예: 강제노동, 차별 금지 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됨.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로, 디지털 시대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

- 인권영향평가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주요 검토 항목이 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평가 기준이 됨.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기관의 인권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준거가 됨.

○ 지역 인권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인권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지역 단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서 보조 기준으로 활용됨.

□ 국제 인권 규범 준거

○ 국제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으로 구성됨.
-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보편적 인권 원칙을 제시하며, 각 정책이나 사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임.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GPs)

-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와 기업의 인권 책무를 구체화한 국제 기준임.
- 기업의 인권실사(HRDD) 수행과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에 있어 필수 참조 기준임.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등 5개 기본원칙과 관련된 10개 기본협약으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빈곤, 교육, 성평등, 환경 등 17개 목표는 인권과 직결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인권영향평가와 긴밀히 연계됨.

- 정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함.
- 국내외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제도 확대 동향
 - EU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시행되고 있다. 재단이 직접 적용대상인지와는 별개로, 계약상대방 및 공급망의 인권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III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 동향 및 주요인권이슈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 동향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단순한 선언이나 교육을 넘어, 기관의 정책·조직·사업·계약·시설 운영 전반에서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히 구제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은 인권영향평가 실시,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마련,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 예방점검,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단순 점검 결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과제별 담당부서·추진기한·성과지표를 부여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

□ 주요 인권 이슈

○ 인권·환경 실사 및 환경권

기관의 시설운영,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친환경 구매, 환경교육 등은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환경 관련 활동을 개별 실천에 그치지 않고, 환경목표·관리지표·담당체계·교육계획을 포함한 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및 정보인권

청소년 및 보호자, 직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특히 청소년의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CCTV 운영,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등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

공공시설은 이용자의 사생활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하며, 화장실·탈의실 등 취약 공간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은 중요한 인권보호 과제임. 정기적인 자체점검, 점검기록 관리, 발견 시 대응절차, 이용자 안내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요구됨.

○ 산업안전 및 이용자 안전권

직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와 청소년 참여자에게는 안전한 활동환경을 제공해야 함.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보호자 안내,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가 중요함.

○ 청소년 권리보호

청소년은 재단의 주요 이해관계자이자 서비스 이용자임. 청소년의 참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권, 건강권, 의견표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청소년 관점을 반영해야 함.

□ 재단 사업 특성에 따른 인권 리스크

재단은 청소년 대상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안전권, 참여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불법촬영, 개인정보 노출,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적 표현 및 참여 배제 등을 주요 인권 리스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IV 평가목적 및 개요

□ 평가 목적

재단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 경영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우선순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평가 기간

- 평가기간: 2026.7.1.~7.31.
- 증빙자료 기준일: 2025년 1월~12월

□ 평가 대상

○ 기관운영 평가

재단의 인권경영 체계, 인사·노무, 산업안전, 개인정보, 환경, 이용자 보호, 구제절차 등

○ 주요사업 평가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사업의 기획, 모집, 운영,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이해관계자 임직원, 청소년, 보호자, 시설 이용자, 협력기관, 계약상대방 및 지역사회

□ 평가 기준 및 등급 기준

- 평가 문항은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관련 제도 존재 여부, 실제 운영 여부, 증빙자료의 충실성 및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의 충족 정도는 ‘예·보완 필요·아니요’의 3단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없음’ 또는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제외

※ ‘정보없음’ : (미래에 해당사항이 있을수 있으나) 현재는 관련정보없음

※ ‘해당없음’ : 재단의 사업범위 및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관련내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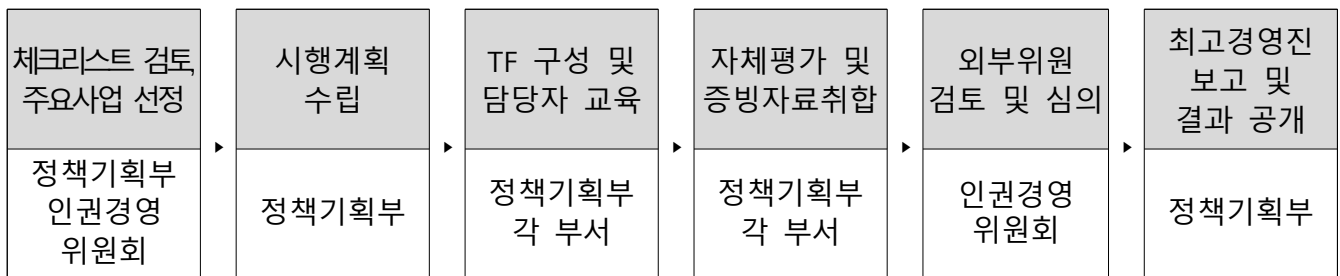
- 각 평가분야의 유효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100점 환산하여 분야별 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균 점수는 각 평가분야별 환산점수를 동일 가중하여 산출평균함.
- 종합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 등급을 산출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평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40점 이상 50점 미만	30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3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미만	10점 미만

□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 구성

구분	구성 및 역할
내부평가	정책기획부 인권경영담당, 행정지원부 분야별 담당, 주요사업 담당
외부평가 ¹⁾	인권·노무·청소년·안전·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의기구	인권경영위원회
최종보고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등 관련 의사결정기구

V 평가 추진 절차



구분	세부내용
1. TF 구성 및 담당자 교육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평가자료 제출 및 자체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함. 담당자에게 인권영향평가 목적, 점검항목 해석, 증빙자료 작성·제출 및 개선과제 도출 방법 등을 안내함.
2. 부서별 자체평가 및 증빙자료 취합	각 부서는 실무 항목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지침·공문·계약서·안내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함. 일부 항목은 자료 관리가 미흡하여, 향후 증빙자료 목록과 보관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3. 외부위원 검토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외부 자문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준수뿐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증빙자료 충실성 등을 검토함. 결과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하며, 주요 권고사항과 중대성 평가 결과를 향후 이행계획에 반영함.
4. 최고경영진 보고 및 결과	평가 결과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고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 홈페이지, 경영 공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추진 사실과 주요 결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1) ※ 본 보고서의 ‘외부평가’는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산정한 평가를 의미함. 위원회에는 외부위원과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 독립성의 한계와 개선방향은 XI장의 ‘평가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제시함.

VI

세부결과

□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및 취합

○ (기본방향)

-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자체평가
- 지표 작성 및 증빙자료 별도 취합
- 지표 실적 관리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적을 취합·관리

□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및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 일시 : 2026. 7. 3.(금)

구분	소속	담당자		담당지표
	부서	직위	성함	
기관운영 평가	정책기획부	부장	류병석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환경권
	행정지원부	팀장	정정은	- 결사 및 단체교섭의자유보장
	행정지원부	팀장	현유경	- 고용상의 비차별 - 직원인권보호 - 강제노동의 금지 - 아동노동의 금지
	행정지원부	대리	오경미	-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 보건의료 및 감염병
	행정지원부	대리	정은기	- 산업안전보장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인권보장 - 고객인권보호
주요사업 평가	청소년수련관	대리	윤재은	- 문화예술교육 「문화로움」

○ 내용 : 지표 확정 전 지표담당자 사전 교육, 평가자료 작성안내

○ 자료제출기한 : 2026. 7. 10.(금)

□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지표 : 기관운영 체크리스트(13개 분야, 189개 지표)

연번	13개분야	중분류	지표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6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4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4
		인권경영 성과	7
		구제절차 마련	9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의 비차별	5
		고용상의 남녀차별	6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외국인 근로자의 비차별	2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5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7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금지	6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8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5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2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환경정보의 공개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비상계획 수립	5
10	고객인권보호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안전사고 등 발생시 조치	2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개인정보보호	10
		정보인권보호	3
12	직원인권보호	갑질 폭력 예방 및 괴롭힘 금지	12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6
		일가정 양립	7
		휴식권	3
13	보건의료 및 감염병	보건의료기본법의 준수	4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2
		금연환경조성	2
		건강관리	2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합 계			189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지표 : 주요사업 체크리스트(1개 사업, 4개 분야 , 20개 지표)

1개 주요사업	지표
교육기획	8
교육대상모집	2
교육내용	3
교육관리	7
합 계	20

□ 인권경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및 인권영향평가 외부평가

○ 회의개요

- 일 시 : 2026. 7. 29.(수) 16:00~18:00
- 참석인원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5명
- 주요내용 : 2026년 인권영향평가 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분야별 외부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체크리스트, 내부평가 자료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분야별 평가표 작성

구분	성 명	소 속	평가영역
유관기관	홍진호	前)운산고등학교 교장	-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10. 고객인권 보호
유관기관	류미숙	광명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소장	- 5. 아동노동의 금지 - 12. 직원 인권 보호
전문가	오종필	늘푸른 노무사사무소 대표	- 2. 고용상의 비차별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4. 강제노동의 금지
당연직	박성숙	(재)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 6. 산업 안전 보장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 13. 보건의료 및 감염병
근로자대표	김주연	(재)광명시청소년재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	- 9. 환경권 보장 -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VI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결과

- 평가 결과, 재단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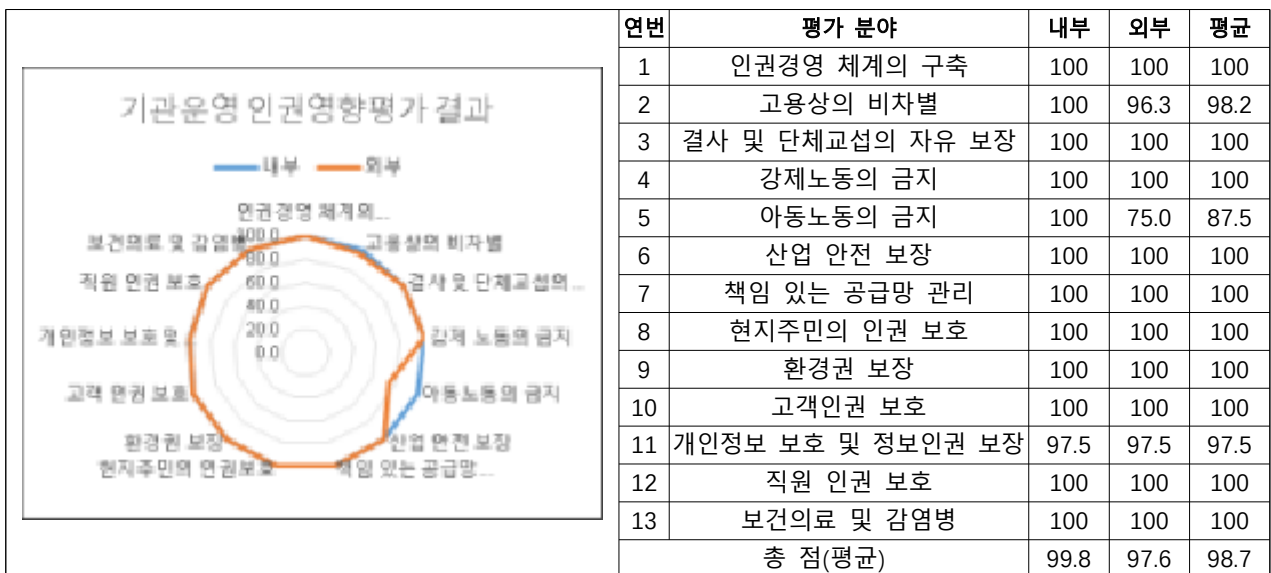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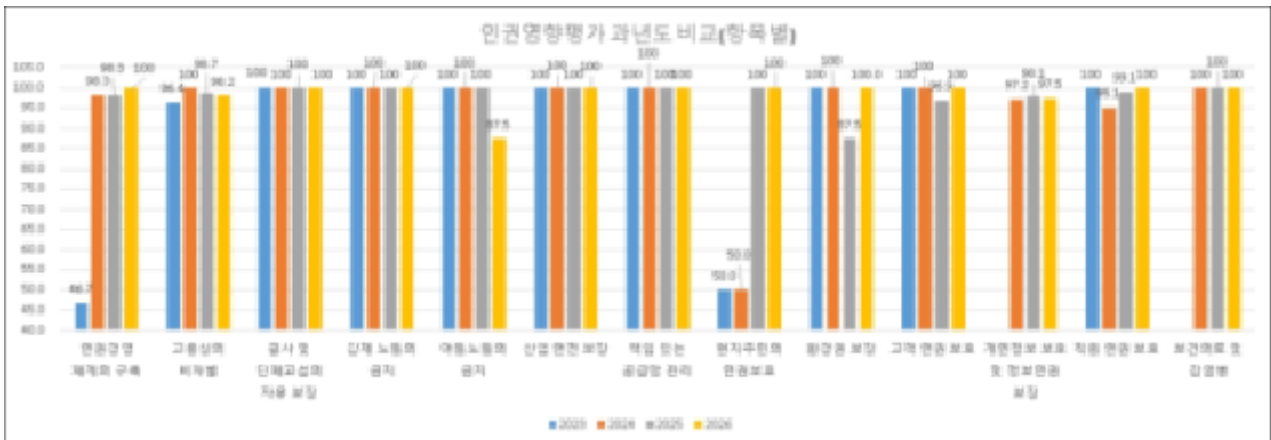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점수	등급
99.8점	97.6점	98.7점	1등급

-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됨.
 -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는 내부평가 100점, 외부평가 75.0점으로 평균 87.5점을 기록하였으며, 종합평균보다 11.2점 낮아 평가점수 측면에서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내부평가에서는 현재 연소자 고용 사례가 없어 일부 항목을 해당 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외부평가에서는 향후 연소자 고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대비한 보호조치 및 확인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따라 실제 연소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소자 고용 사실 확인 시의 보호조치, 관계기관 신고 및 근로조건 점검 등에 관한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상 비차별 분야는 98.2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외부평가에서 관련 규정과 관리체계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과 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인사 과정에서의 차별 예방 기준과 점검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분야는 97.5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불법촬영 예방점검과 점검기록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권 보장 분야는 2025년 87.5점에서 2026년 100점으로 12.5점 상승함. 이는 ESG 경영계획, 친환경 활동, 환경교육 및 비상계획 수립 등 전년도 보완사항의 이행성과가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향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및 친환경 활동 실적과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선과제의 최종 우선순위는 분야별 평가점수뿐만 아니라 인권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 심각성을 반영한 중대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재단은 인권경영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평가 결과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아동노동 예방, 고용상 비차별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환경권 보장 분야는 현행 관리체계와 증빙자료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표별 세부평가 결과

○ 분야 1. 인권경영 체계 구축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인권존중 정책선언	100	100	10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실시	100	100	10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100	100
	인권경영 성과	100	100	100
	구제절차 마련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2025년 평가에서는 구제절차 마련 영역의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와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는 지표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됨. 이에 재단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절차 운영 및 결과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전문 지원 연계체계를 보완하였음.
- 그 결과 2026년 평가에서는 구제절차 마련을 포함한 모든 평가지표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하였음. 이는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경영 환경 조성·실시,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및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전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보완이 요구되었던 구제절차와 피해자 지원체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향후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 내부 100점 / 외부 96.3점 / 평균 98.2점

고용상의 비차별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고용상의 비차별	100	90.0	95.0
	고용상의 남녀차별	100	91.7	95.8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100	100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00	100	100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96.3	98.2

- 재단은 고용 전 과정에서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외국인·장애인 근로자 차별 분야에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함. 이에 따라 고용형태·국적·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예방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26년 외부평가에서는 관련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후생복지 규정상 계약직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표현은 적용 여부를 재단의 재량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교육·배치·승진 등에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 또는 남녀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평가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부여됨.
- 이는 실제 차별 사례의 발생 여부보다는 비차별 원칙과 적용대상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향후 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적용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배치·승진·임금·복리후생 등 인사운영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100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100
	노동조합부재시 대안적 조치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내부평가 시 포함하였던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항목 중 노동조합 관련 지표는 외부평가 시 ‘해당없음’으로 제외됨.

○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금지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재단의 제도적 장치는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 내부 100점 / 외부 75.0점 / 평균 87.5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금지	100	100	100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가제외 (해당없음)	50.0	5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75.0	87.5

- 재단은 채용 시 제출서류를 통해 연령과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 최저취업연령 미달자 또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연소자 고용 사실 확인 시 조치’ 지표에 대해 내부평가에서는 적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한 반면, 외부평가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대응 지표로 보아 평가대상에 포함함. 외부평가 결과, 연소자 보호 조치, 근로조건 점검, 내부보고 및 관계기관 신고 여부 검토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표에 50점이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간 평가대상 및 점수 산정에 차이가 발생함.

○ 분야 6. 산업 안전 보장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산업 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00	100	100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등	100	100	10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	100	100
	산업재해피해 근로자 지원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분야에서 요양비 지급관련 지표에 대하여 내부평가에서는 현재 적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외부평가에서는 향후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차년도 평가에서는 ‘정보없음’과 ‘해당없음’의 구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기관, 공급업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분야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분야 9. 환경권 보장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	100	100
	환경정보의 공개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비상계획 수립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분야 10. 고객인권 보호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고객인권 보호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100
	안전사고 등 발생시 조치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고객인권 보호’ 분야는 재단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의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함. 관련 법령 준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위험요소 사전점검, 사고 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절차를 중심으로 점검함.
- 재단은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프로그램 별 위험요소 사전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피해자 보호 및 후속조치, 재발방지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평가 결과,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와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조치’의 모든 지표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함. 고객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 대응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된 기록·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분야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내부 97.5점 / 외부 97.5점 / 평균 97.5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개인정보보호	95.0	95.0	95.0
	정보인권보장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97.5	97.5	97.5

-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서 각각 97.5점을 획득함. 다만,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의 불법촬영 예방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대상·주기·방법 담당부서와 점검기록 관리 및 이상 발견 시 대응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향후 자체점검 계획을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야 12. 직원 인권 보호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직원 인권 보호	폭력예방	100	100	100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100	100	100
	일가정양립	100	100	100
	휴식권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재단은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접수, 조사, 비밀보장, 피해자 보호, 업무상 분리 및 상담 지원,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평가 결과, 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조치, 일·가정 양립, 휴식권 등 직원 인권 보호 전 영역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함.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 처리 과정과 처리 종료 이후의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관리 사항이 대응체계에 반영되어,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향후에도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제도 점검을 지속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후관리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직원 인권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야 13. 보건의료 및 감염병 : 내부 100점 / 외부 100점 / 평균 100점

	내 용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
건강권(보건의료 및 감염병)	보건의료기본법의 준수	100	100	100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100	100	100
	금연환경조성	100	100	100
	건강관리	100	100	100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100	100	1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00	100	100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100	100	100

- 재단은 임직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금연·절주 문화 조성, 건강증진 활동, 일과 삶의 균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평가 결과, 관련 법령 준수,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건강관리,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감염병 예방·관리 등 모든 지표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함.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위생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및 확산 방지 절차도 적절하게 운영되는 등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됨.
- 향후에도 임직원의 건강관리 수요와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교육·홍보 및 예방활동을 통해 건강권 보호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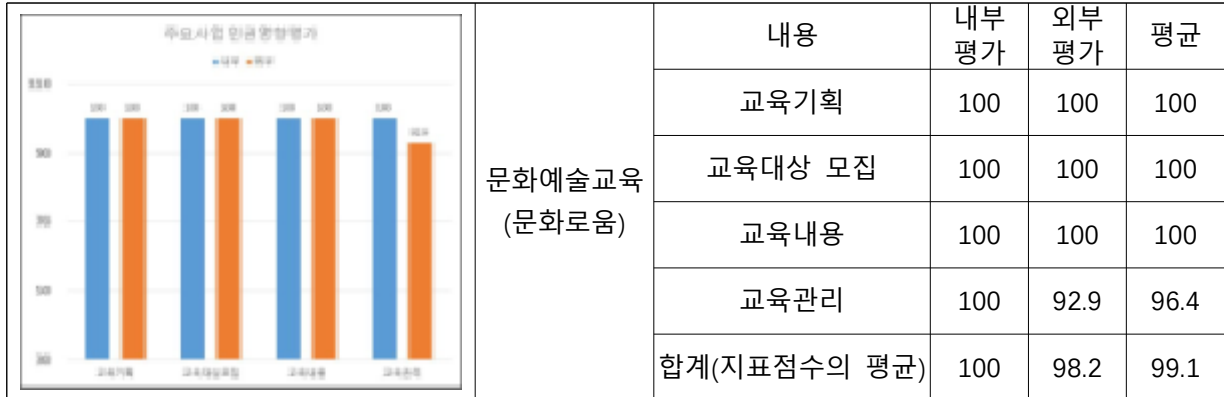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결과

-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분야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이 충실히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함.
- 본 평가는 2024년도 개발된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 총 1개 주요사업, 4개 평가분야, 20개 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인권경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내부평가	외부평가	평균점수	등급
100점	98.2점	99.1점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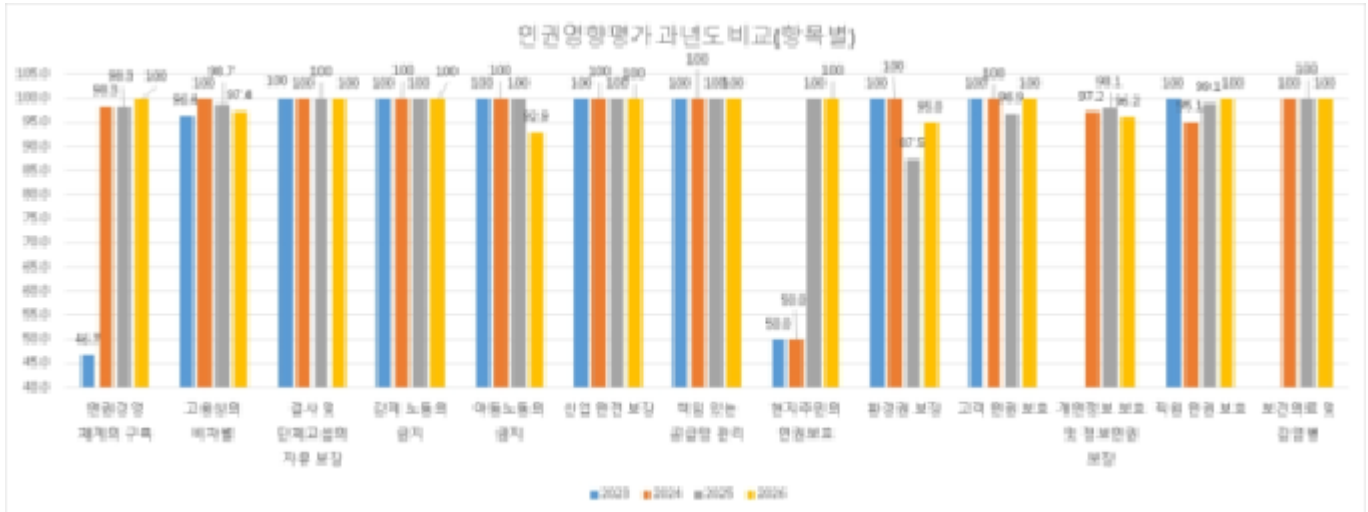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문화로움)

-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주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문화로움)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교육기획, 교육대상 모집, 교육내용 및 교육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함.
- 2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 결과, 내부평가는 100점, 외부평가는 98.2점, 평균점수는 99.1점으로 1등급을 획득함. 교육기획, 교육대상 모집 및 교육내용 분야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하였으며, 교육관리 분야는 외부평가에서 92.9점을 받아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제시됨.
- 외부평가에서는 만족도 조사 문항이 ‘선생님이 잘 도와줬나요?’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의 질과 강사의 운영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따라 교육내용의 이해도와 적절성, 강사의 설명 및 진행 방식, 교육자료의 유용성, 강사의 사전 준비와 참여자 지원 정도, 교육환경 및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강사 관리 및 교육자료 보완에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인권 친화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IX

인권영향평가 결과 비교(2023년~2026년)

□ 2023~2026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분석



○ 연도별 평가결과 및 변화 추이

광명시청소년재단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연도별 점수 변화와 주요 개선과제의 이행 추이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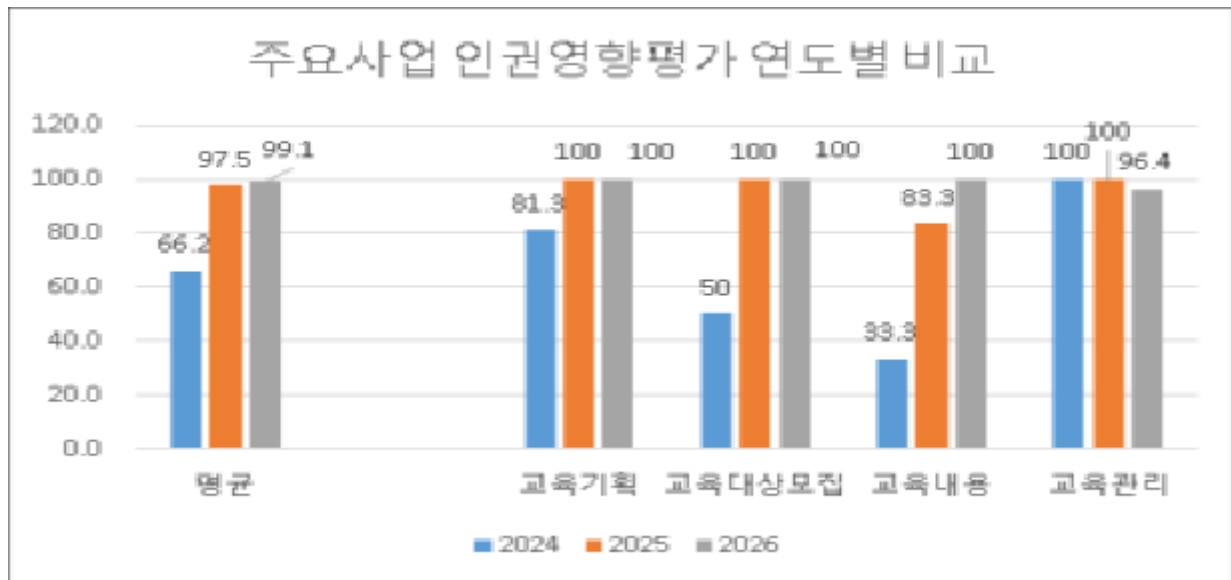
- 2026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내부평가는 99.8점, 외부평가는 97.6점, 종합평균은 98.7점으로 1등급을 획득함. 이는 재단의 인권경영 추진체계, 산업안전, 고객 보호, 환경권, 직원 인권보호 등 기관운영 전반의 인권경영 이행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가 분야 수	11개 분야	13개 분야	13개 분야	13개 분야
구성지표수	118개 지표	190개 지표	190개 지표	189개 지표
내부평가 점수	90.3점	95.4점	98.6점	99.8점
외부평가 점수	-	95.4점	98.1점	97.6점
종합평균 점수	90.3점	95.4점	98.4점	98.7점
평가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주요 특징	인권영향평가 최초 실시	체크리스트 개발	환경권 보장 분야 보완필요	일부 예방절차 보완 필요

※ 연도별 점수는 해당 연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확정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 연도별 평가 결과는 평가 분야와 지표 구성, 지표별 평가대상 해당 여부 및 점수 산정기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합점수의 증감만으로 인권경영 수준의 향상 또는 저하를 단정하기보다는 동일·유사 지표의 이행 수준, 전년도 개선과제의 반영 여부 및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4~2026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분석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2024년 66.2점에서 2025년 97.5점, 2026년 99.1점으로 상승함. 특히 교육기획과 교육대상 모집 분야는 2025년 이후 10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분야도 2024년 33.3점에서 2026년 100점으로 개선됨.
- 2026년에는 교육기획, 교육대상 모집 및 교육내용 분야가 모두 100점을 기록함. 교육관리 분야는 96.4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외부평가에서 교육 만족도 조사 문항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도별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사업과 지표 구성, 점수 산정방식의 변동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합점수의 증감뿐만 아니라 동일·유사 분야의 개선 수준과 전년도 개선과제의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평가 분야 수	4개 분야	4개 분야	4개 분야
구성지표수	19개 지표	19개 지표	20개 지표
내부평가 점수	66.2점	97.5점	100점
외부평가 점수	66.2점	97.5점	98.2점
종합평균 점수	66.2점	97.5점	99.1점
평가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주요 특징	체크리스트 개발	교육내용의 인권침해 요소 모니터링 필요	교육관리 분야 일부 보완 필요

※ 2023년 결과는 체크리스트가 상이하여 제외함.

□ 2026년(2025년 실적) 평가결과의 주요 특징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총 13개 분야 중 10개 분야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함. 해당 분야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 보호, 직원 인권 보호, 보건의료 및 감염병 분야임.
- 특히 환경권 보장 분야는 2025년 87.5점에서 2026년 100점으로 12.5점 상승함. 이는 ESG 경영계획 수립, 친환경 활동 추진, 환경교육 실시 및 비상계획 수립 등 전년도 평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을 제도와 운영에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종합평균 98.7점보다 낮은 분야는 아동노동의 금지 87.5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97.5점, 고용상 비차별 98.2점으로 나타남. 다만 분야별 평가점수는 제도와 절차의 구축·운영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 심각성 등을 평가하는 중대성 평가 결과와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내부평가는 100점, 외부평가는 98.2점, 종합평균은 99.1점으로 1등급을 획득함. 교육기획, 교육대상 모집 및 교육내용 분야는 모두 100점을 기록하였으며, 교육관리 분야는 평균 96.4점으로 만족도 조사 문항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구분	주요 내용	관리 방향
인권경영 체계	내부·외부평가 모두 100점으로 제도적 기반 및 구제절차 운영 수준이 양호함	제도 운영 실태, 피해자 지원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 지속 점검
환경권 보장	2025년 87.5점에서 2026년 100점으로 상승	환경경영 활동, 환경교육 및 비상계획 관련 증빙자료 지속 관리
고용상 비차별	평균 98.2점으로, 성별 차별금지 및 계약직 복리후생 기준의 명확성 보완 필요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구체성 강화
아동노동의 금지	평균 87.5점으로, 연소자 고용 사실 인지 시 대응절차 미비	보호조치·근로조건 점검·신고 절차 사전 마련
개인정보 및 정보인권	평균 97.5점으로, 불법촬영 예방점검 체계의 구체성 보완 필요	점검 정례화, 기록관리 및 대응 절차 마련
주요사업 교육관리	평균 96.4점(내부평가 100점, 외부평가 92.9점)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 문항의 구체성 보완 필요	참여자 의견수렴 및 조사결과 환류체계 강화

□ 종합 의견

- 평가 결과, 재단은 인권경영체계의 제도적 기반과 기관운영 전반의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수 분야에서 내부·외부평가 모두 100점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되었던 환경권 보장 분야가 개선된 점은 평가결과를 제도 및 운영 개선으로 연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다만 높은 종합점수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 예방절차, 사생활 및 정보인권 보호체계, 고용상 비차별 기준의 명확성 등 일부 세부 영역에서는 예방적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와 인권침해 발생 시 영향이 큰 이슈는 중대성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선과제 및 이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대성 평가 및 주요인권이슈 도출

□ 중대성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 8.)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인권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대응할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하도록 권고함. 이에 따라 이번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인권 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함.
- 중대성 평가는 인권 이슈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 심각성(consequence)을 기준으로 실시함.
 - 발생 가능성: 재단 및 타 공공기관에서의 과거 발생 빈도와 현재 또는 미래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함.
 - 영향 심각성: 해당 인권 이슈가 현실화되었을 때 기관의 사업성과·평판·재정에 미치는 영향, 법 위반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함.
- 중대성 점수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 심각성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총점은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임. 산출된 점수에 따라 인권 이슈를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함.
 - 고위험군(8~10점): 최우선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노력을 추진해야 하는 인권 이슈
 - 중위험군(5~7점): 고위험군에 이어 차순위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노력을 추진해야 하는 인권 이슈
 - 저위험군(2~4점):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인권 이슈

구분	중대성 평가 기준(점)		인권별 이슈점수 산출기준(점)		
	발생 가능성	영향 심각성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점수	1-5	1-5	8-10	5-7	2-4

□ 기관운영평가 중대성 평가

사업명	세부항목 및 인권이슈	중대성평가				개선과제
		발생 가능성	영향 심각성	점수	분류	
고 용 상 비차별	성별 차별금지 원칙 및 계약직·수습 임용자 복리 후생 적용기 준의 구체성 부족	3	4	7	중위험군	① 성별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및 승진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 ② 규정 정비 및 교육 실시 - 인사·복지 관련 규정 개정 시 인권경영 관점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고용평등 및 비차별 교육을 정례화
아 동 노 동의 금 지	연소자 고용 사실 인지 시 보호조 치, 근로조 건 점검 및 관계기관 신 고절차 미비	2	5	7	중위험군	① 연소자 고용 예방 및 연령확인 절차 강화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통해 연령 및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담당자가 확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절차를 정비 ② 연소자 고용 인지 시 대응절차 마련 - 연소자 고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 조정·보호조치, 근로조건 점검, 내부보고 및 관계기관 신고 필요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 ③ 재발방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채용·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소자 고용 관련 법령 및 대응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규정과 점검기록을 정기적으로 관리
개 인 정 보 보호 및 정보 인권 보 장	화장실·탈의 실 등 사생 활 보호공간 의 불법촬영 예방점검 및 대응체계의 구체성 부족	3	5	8	고위험군	① 불법촬영 예방점검 정례화 -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주기·방법·점검항목을 명확히 설정 ② 점검책임 및 결과관리 체계 마련 - 점검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 결과 및 이상 유무를 기록·관리 ③ 발견 시 대응절차 구체화 - 의심 장비 발견 시 즉시 신고, 이용자 보호, 관계기관 협조 및 후속조치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

직원 인 권보호	인권 침해·괴 롭힘 사건 발생 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의 지속적 실효 성 점검 필 요	2	4	6	중위험군	① 사건 종결 후 사후관리 절차 운영 - 피해자 보호조치, 업무조정,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② 2차 피해 예방체계 강화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및 보복 행위 방지 원칙을 안내하고, 관리자 대상 대응교육 실시 ③ 구제절차 운영 실태 점검 - 구제절차의 접근성, 처리기한 및 결과통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	---	---	---	---	------	---

※ 체크리스트 점수는 현재 제도와 절차의 구축·운영 수준을 평가한 것이며, 중대성평가는 해당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과 잔여위험을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100점을 획득한 분야에서도 지속관리가 필요한 주요 인권이슈가 도출될 수 있다.

☐ 주요사업평가 중대성 평가

사업명	세부항목 및 인권이슈	중대성평가				개선과제
		발생 가능성	영향 심각성	점수	분류	
문화로움	교육 만족도 조사 문항의 구체성 부족 으로 인한 교육품질 및 참여자 요구 파악의 한계	3	3	6	중위험군	① 만족도 조사 문항 구체화 - 교육내용의 이해도·적절성, 강사의 강의기법, 교재 및 자료의 유용성, 교육환경, 강사 지원 및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 설문 문항 보완 ② 조사결과의 환류체계 마련 -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기 교육계획, 강사 선정 및 교재·교육환경 개선에 반영 ③ 교육현장 의견수렴 강화 - 정량형 설문 외에도 자유의견, 간단한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구체적 개선의견 수렴

□ 주요 인권이슈 도출 결과

- 중대성평가 결과, 공공시설 내 불법촬영 예방점검 및 대응체계 보완은 청소년과 이용자의 사생활권·인격권 및 안전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침해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과 회복의 어려움이 큰 사안으로 판단되어 고위험군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함.
- 성별 차별금지 원칙 및 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복리후생 적용기준의 명확화, 연소자 고용 사실 인지 시 보호조치·근로조건 점검·신고절차 마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의 지속관리, 문화로움 사업 참여자의 의견 표명권 및 교육과정상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의견수렴 체계 개선은 중위험군으로 분류함.
- 특히 연소자 고용 관련 이슈는 현재 실제 고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발생 시 아동·청소년의 노동권 및 안전권 침해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중위험군 이슈로 선정함.
- 재단은 고위험군 이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중위험군 이슈는 관련 규정·지침 및 매뉴얼 정비, 담당자 교육, 정기점검과 증빙자료 관리를 통해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와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XI

개선제안 사항

- 재단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직원 보호, 고객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상 비차별 규정의 명확화, 불법촬영 예방점검의 정례화, 주요사업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체계 개선,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상 비차별
 - 계약직 및 수습임용자의 복리후생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채용·임금·복리후생·교육·배치·승진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인사·복리후생 규정 개정 시 차별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정 내용을 직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아동노동의 금지

- 실제 연소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소자 고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의 보호조치, 근로조건 점검, 내부보고 및 관계기관 신고 여부 검토 절차를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에 사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의심 장비 발견 시 신고, 이용자 보호 및 관계기관 협조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사업 교육 관리

- 문화로움 사업의 만족도 조사 항목을 교육내용, 강사, 교재, 교육환경 및 개선 의견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결과를 차기 교육계획과 운영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교육 과정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속관리 사항

- 구제절차, 고객 안전관리 및 직원 인권보호 등 양호한 분야는 정기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현행 운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비밀보장, 불이익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평가의 한계 및 개선방향

-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와 증빙자료 검토,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평가 과정에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외부 전문가가 점수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개선과제를 심의하도록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근거와 이견 조정 과정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 차년도 부터는 평가 전에 지표별 적용 여부를 확정하여 내부평가와 위원평가에 동일한 유효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없음’은 구조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고 증빙 수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XII **향후계획**

-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예방절차, 증빙관리 및 평가방법의 객관성 관련 개선사항을 차년도 인권영향평가 전까지 보완
- 차년도 평가부터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분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을 검토
-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
- 확정된 개선과제를 차년도 인권경영계획에 반영
-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인권경영 이행력을 강화